

대전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111484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11148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가단100599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항소인 A

변론 종결 2020. 5. 19

판결 선고 2020. 6. 9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가단10059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498,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보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 6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그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건 입찰공고(공고 D, 이하 '이 사건입찰공고' 라 한다) 의 물품 원가 상승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해로 피고가 더 이상회사를 운영할 수없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이 사건 입찰 공고의 물품 금액은 당시의 물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 된 입찰공고이었으나 원고가 입찰취소공고를 게시하지 않아 입찰 무효이다.

나. 판단

1)위 가의 1)항 주장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 6. 25. 대통령령제 2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제 6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다른내용의 규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위 가의 2)항 주장 부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입찰 공고의 물품 금액이 당시 물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인 피고가 분석하여 판단, 결정할 사안인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 공고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선 피고의 이 부분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판사 이경희판사 이태영